

# 부천시 명예시민증서 수여결과 보고

의안 번호	제142호
의결 년월일	2007. 9. 5 (제138회)

제출년월일 : 2007. 8. 29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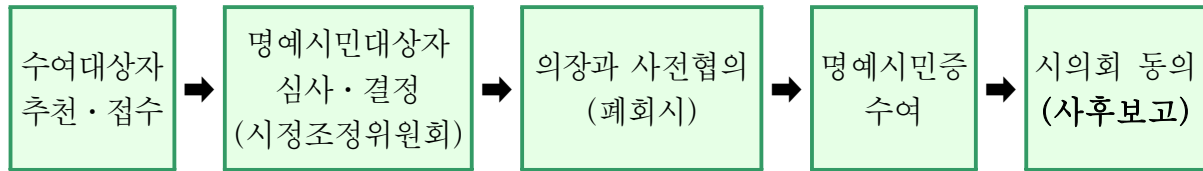
제 출 자 : 부 천 시 장

## □ 제안이유

- 1995.11.28 부천시와 자매결연을 체결한 중국 하얼빈시는 청소년 홈스테이, 문화예술단 상호방문공연, 경제교류, 시민대표단 상호방문교류, 의료사업 추진 등 다양한 분야에서 가장 모범적이고 활발한 교류가 추진되고 있는 도시임
- 이러한 모범적인 교류사업은 하얼빈시의 최고 결정권자인 두우신 당 서기께서 양 도시의 교류발전에 적극적으로 노력하였기에 가능하였음
- 그러한 대표적인 교류사업으로는 조선민족예술관과 한국교민회관 무상제공과 안중근의사 기념사업 추진, 교육비의 내·외국인간 차별 철폐, 한국주간행사 개최 등 많은 사업을 추진하였음
- 이에 따라, 그 동안 부천시와의 교류를 통하여 한국인으로서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한국민의 우수한 민족성을 대내외에 홍보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주신 중국 하얼빈시위원회 두우신 당 서기에게 2007. 8.29 부천방문시 부천시 명예시민증서를 수여하였기에, 부천시 명예시민증서 수여조례 제3조에 의거 본회의에 보고하고자 함.

□ 수여근거 : 부천시 명예시민증서 수여조례

□ 수여절차



※ 부천시 명예시민증서 수요조례 제3조(수여결정) 명예시민증서를 수여하고자 할 때에는 시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. 다만, 시의회가 폐회중인 때에는 시의회 의장과 협의하여 수여하고 수여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한다.

※ 사전협의결과 회신공문 사본 : 별지 1

□ 수여결과


- 수여일시 : 2007년 8월 29일
- 수여시기 : 하얼빈시 대표단 부천시장 주최 환영만찬시
- 수여자
  - 소속 : 중국하얼빈시위원회
  - 직위 : 당서기
  - 성명 : 두우신(杜宇新)
  - 생년월일 : 1953.12.15(54세)
  - 주요경력 : 중국하얼빈시위원회 당서기 및 중국흑룡강성위원회 부서기
- 주요공적 : 양 시간 국제교류 협력증진을 통한 글로벌 부천인 육성 및 부천시의 위상제고
- 수여내용 : 부천시 명예시민증서 및 기념패, 전통한복(기념품)

## □ 참고사항

- 부천시 명예시민증서 수여자 추천서 : 별지 1
- 부천시 명예시민증서 수여내역 : 별지 2
- 부천시 명예시민증서 수여조례 : 별지 3

별지 1]

## 명 예 시 민 증 서 수 여 대 상 자 인 적 사 항

	성 명	두우신(杜宇新)
	생 년 월 일	1953. 12. 15
	국 적 (출 생 지)	중국(흑룡강성 임구시)
	직업(직위)	공무원(중국하얼빈시위원회 당 서기)
	학 력 및 주 요 경 력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1973. 9 흑룡강대학교 중문과를 졸업하고</li> <li>○ 1976. 8 중국 공산당에 입당</li> <li>○ 1939. 9 흑룡강성 교통국에서 공무원을 시작한 이래 쌍계산시, 흑룡강성에서 주요요직을 거친후</li> <li>○ 2002. 4 흑룡강성 상위 정법위원회 서기</li> <li>○ 2003.12 하얼빈시위원회 서기로 재임중임</li> </ul>
공 적 요 약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조선민족예술관 리모델링 및 무상기증</li> <li>○ 한국교민회관 무상 기증 및 한상분회 정식법인등록</li> <li>○ 안중근기념사업 추진(하얼빈역, 조선민족예술관, 조린공원)</li> <li>○ 하얼빈공안국과 하얼빈공항에 한국어 도우미를 상시 배치하여 중국어를 모르는 한국인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치</li> <li>○ 내·외국인의 교육비 차별 철폐</li> <li>○ 하얼빈시정부와 한국교민회 간부와의 정례간담회 개최</li> <li>○ 한국관련 문화행사를 대대적으로 개최하여 우리문화의 우수성 전파</li> <li>○ 부천 - 하얼빈시 간 교류활성화에 기여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청소년 홈스테이 상호방문 교류 : 매년 10명</li> <li>· 하얼빈 한국주 부천의 밤 문화공연 : 2회</li> <li>· 시민방문단 상호방문 : 100명 ~ 150명(년)</li> <li>· 부천 - 하얼빈 청소년 사진 교류전 개최</li> <li>· 하얼빈 무역박람회 부천기업 참가</li> </ul> </li> </ul>	

## 부천시 명예시민증서 수여현황

연번	수여일	대 상 자			공 적 사 항	비고
		성 명	직 위	국적		
계	10회	24명				
1	'81. 9.29	잭.비.화이트	벌드원파크시 시장	미국	자매결연 추진유공	시 장 추 천
2	'88. 3.18	빌제이 듀크스	디케터시 시장	미국	자매결연 추진유공	상공회의 소추천
3	"	래리 베니치	모간군위원회 회장	미국	"	"
4	"	레이 캠벨	알라바마주 상원의원	"	"	"
5	"	존디 룡	하드셀레시 시장	"	"	"
6	"	토마스라이드	디케터 일간지 주필	"	"	"
7	"	바이론 넬슨	디케터시 교육장	"	"	"
8	"	얼 모리스	모간군 산업개발협회 부이사	"	"	"
9	"	어빈 컴맨더	디케터 상공회의소 전무이사	"	"	"
10	"	에릭 헨콕	디케터우송국 시장조사부사장	"	"	"
11	"	제임스 그레이	그레이전화공급사 사장	"	"	"
12	"	후레드 텐톤	알라바마주정부 국력개발협력이사	"	"	"
13	'88. 4.14	커크폰드	페어차일드코리아 반도체(주) 회장	미국	외자유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	"
14	'02.10. 1	손성목	부천에디슨 과학박물관장	한국 (강릉)	부천에디슨 과학박물관 개관유공	시 장 추 천
15	"	북전영자	셀라뮤즈 자기박물관장	한국 (서울)	문화예술 발전 유공 (161종 850점, 50억원상당 기탁)	"
16	"	임현정	부천시립예술단예술감독, 부천필상임지휘자	한국 (서울)	문화예술 발전 유공	"
17	'03. 5. 3	하기와라 세이지	오카야마시 시장	일본	국제교류협력 및 우호증진 유공	시 장 추 천
18	"	알렉산더 소콜로프,	하바로프스크시 시장	러시아	"	"
19	"	김창남	재일본대한민국민단오 카야마현지방본부단장	일본	"	"
20	'03.10. 1	이장호	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 제 초대집행위원장 현 전주대학교 교수	서울	문화예술 발전 유공	"
21	'04. 5. 1	미야카와 히요시	일본 오카야마시의원 일한의원연맹회장	일본	시민교류증진 유공	한일친선 협회추천
22	'05. 8.19	석충신	중국 하얼빈시 시장	중국	국제교류협력 및 우호증진 유공	시 장 추 천
23	'07. 5. 4	하비 홀	미국 베이커스필드시장	미국	국제교류협력 및 우호증진 유공	시 장 추 천
24	'07.8.29	두우신	중국하얼빈시위서기	중국	국제교류협력 및 우호증진 유공	시 장 추 천
25	'07.10. 1 (예정)	박영관	헤원의료재단세종병원 이사장	한국	국제교류협력 및 부천시정 발전 유공	시 장 추 천

## 부천시 명예시민증서수여조례

제정	1984. 02. 13 조례 제618호
개정	1993. 08. 09 조례 제1236호
개정	1999. 07. 29 조례 제1681호
전문개정	2002. 11. 11 조례 제1898호

**제1조 (목적)** 이 조례는 시정발전에 공로가 현저한 외국인 및 재외동포 또는 타시군 인사에게 수여하는 부천시명예시민증서(이하 "명예시민증서"라 한다)의 수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 (수여대상)** ① 명예시민증서의 수여대상은 외국인 및 재외동포 또는 타시군 인사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.

1. 국내외적으로 부천시의 위상을 제고하고 시정에 적극 협력한 자
2. 사회, 경제, 문화, 예술등 각 분야에서 시민의 생활증진 및 시정발전에 기여한 자
3. 자원봉사등 사회봉사활동을 통하여 지역발전 및 시민화합에 기여한 자
4. 지역개발을 위한 직·간접투자와 국내외 교류협력 및 우호증진에 기여한 자
5. 기타 시정발전에 뚜렷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

② 부천시장(이하 "시장"이라 한다)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부천시를 방문하는 국내외 인사중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명예시민증서를 수여할 수 있다.

**제3조 (수여결정)** 명예시민증서를 수여하고자 할 때에는 시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. 다만, 시의회가 폐회중인 때는 시의회 의장과 협의하여 수여하고 수여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한다.

**제4조 (수여방법)** ① 외국인과 재외동포에게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명예시민증서를 수여하고, 타시군 인사에게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명예시민증서를 수여한다.

② 명예시민증서를 수여할 때에는 기념품을 함께 증정할 수 있다.

**제5조 (수여자의 권리등)** ① 이 조례에 의한 명예시민증서를 받은 자는 지방자치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권리를 가진다.

② 이 조례에 의하여 명예시민증서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우하여야 한다.

**제6조 (취소)**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명예 시민증서를 받은 자가 그 수여에 반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의회의 의결을 거쳐 이를 취소할 수 있다.

**제7조 (기록유지)** 시장은 명예시민증서의 수여 및 회수상황을 명예시민증서 수여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.

**제8조 (시행규칙)**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칙(2003. 11. 11)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